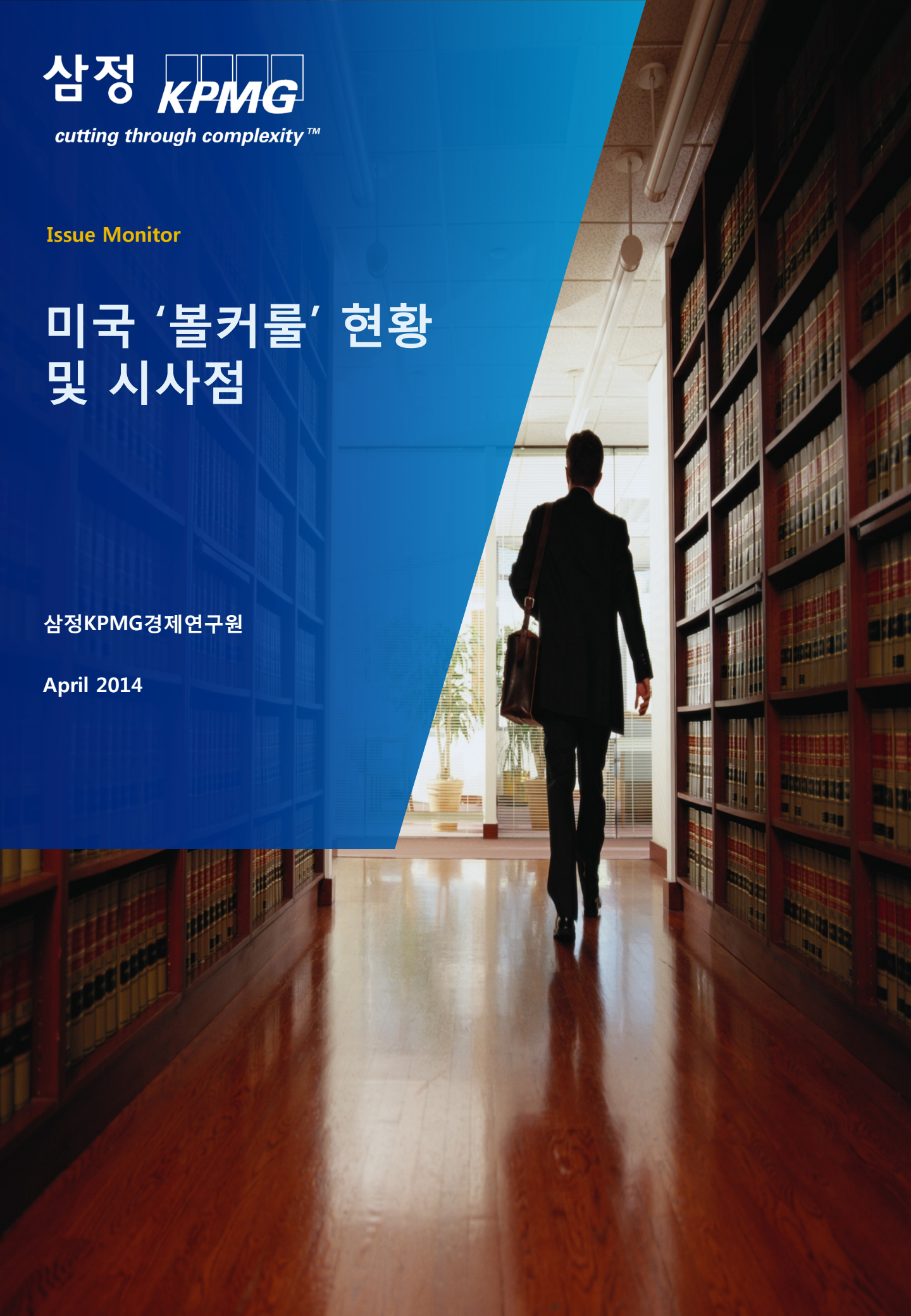


Issue Monitor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삼성KPMG경제연구원

April 2014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이광열
경제연구원
Partner, 삼성KPMG
Tel: + 82 2 2112 0062
kwangryeolyi@kr.kpmg.com

강환우
경제연구원
S. Manager, 삼성KPMG
Tel: + 82 2 2112 7728
hwanwookang@kr.kpmg.com

박광빈
경제연구원
S. Analyst, 삼성KPMG
Tel: + 82 2 2112 3849
kwangbinpark@kr.kpmg.com

송유정
경제연구원
Analyst, 삼성KPMG
Tel: + 82 2 2112 7464
youjungsong@kr.kpmg.com

	Page
Executive summary	2
볼커룰의 시행 배경	3
볼커룰의 주요내용	4
▪ 자기계정거래 금지.....	5
▪ 규제대상펀드 영업 금지.....	8
▪ 준법감시프로그램 운영.....	10
볼커룰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 동향.....	11
국내 영향 및 시사점.....	12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삼성")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시장, 회사,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삼성KPMG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성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KPM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의 위험투자 제한을 골자로 입안된 볼커룰(Volcker Rule)은 '13년 12월 미국 감독당국 승인 및 '14년 1월 미의회 승인을 거쳐 '14년 4월 발효되었다. 이제 미국 소재의 은행들은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업무 및 특정 리스크의 완화를 위한 헤징(Hedging)을 제외한 어떤 자기계정거래도 할 수 없게 되고,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재정 보증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볼커룰의 적용 대상은 미국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이 있는 외국은행도 포함된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계열사에도 적용 되므로 미국 내 지점이 있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계열 증권회사도 볼커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볼커룰 시행 배경

- 볼커룰은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의 고위험 트레이딩 억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적자원 지원 등과 같은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입안됨
- '13년 12월 미국 5개 감독당국은 세부 의견조율을 거쳐 볼커룰 시행을 위한 최종안 (the Final Volcker Rule)을 승인했고, 이후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 '17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확정함

■ 볼커룰의 주요 내용

- 볼커룰의 주요내용은 첫째, 규제대상기관의 자기계정거래 금지, 둘째,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취득 및 투자 등의 규제대상펀드 영업 금지, 셋째, 볼커룰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가 가능한 준법감시프로그램 운용을 골자로 함
- 자기계정거래 금지: 은행이 고유계정상의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거래행위(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대고객 헤지거래 또는 손실제한을 위한 시장조성업무(Market making)만 허용
- 규제대상펀드: 은행법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규제대상펀드의 소유지분을 취득, 보유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은행법인의 위탁, 신탁 혹은 자문서비스 고객을 위한 규제대상펀드는 취득 금지 조항에서 제외되며, 인수 및 시장조성업무와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도 취득을 허용함
- 준법감시프로그램 : 자기계정거래 또는 규제대상펀드 투자 등과 관련이 있는 외국은행, 은행법인 및 관련계열사가 볼커룰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준법감시프로그램 유지와 개선 의무를 규정함

■ 볼커룰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 동향

- 향후 볼커룰 시행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법령 및 내부규율 준수비용의 증가로 부담을 예상함
- 자기계정거래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수립 및 이행, 미국 본토 비즈니스 축소 또는 철수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볼커룰에 대한 정부 대응방향과 적용대상 기관 파악이 요구되며, 향후 볼커룰의 세부 감독 규칙 내용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시행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2010년 1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前의장 폴볼커(Paul Volcker)는 은행법인과 금융지주회사의 투기적 투자행위와 대형화를 규제하는 일명 볼커룰의 도입을 제안했다. 볼커룰은 미국 금융시장의 안전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 은행의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trading)와 헤지펀드·사모펀드 보유를 금지하는 규제안으로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 전 의장 폴 볼커가 제창해 '볼커룰'로 명명되었다. 이후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OCC(통화감독청), SEC(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미국의 금융관련 5개 당국은 2011년 11월 볼커룰 시행을 위한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2013년 12월 10일 볼커룰의 최종안을 승인했다.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 유동화증권의 일종임

최종 승인된 볼커룰은 201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발효된 볼커룰은 유 예 기간 을 거쳐 2015년 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 이었 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일부 파생상품의 볼커룰 적용 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볼커룰의 전면 시행 시점은 2017년 7월 21로 늦춰졌다. 단,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은 2014년 6월 30일부터 볼커룰이 요구하는 관련 거래 정보를 감동 당국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볼커룰 도입 과정 및 시행 일정>

2010. 1. 1 볼커룰 제창	2011. 11. 7 초안 공개	2013. 12. 10 최종안 승인	2016. 4. 30 준법감시 의무시행	2017. 7. 21 볼커룰 전면시행
전 FRB의장 폴볼커가 처음 도입주장	Dodd-Frank 법 하위법안으로 볼커룰 시행초안 공개	- 미국 5개 감독당국 최종안(The Final Volcker Rule)승인 - 발효는 당초 계획인 2014. 4월보다 1년 연장	2016년 4월부터 총자산 250억 달러 이상인 은행법인 준법감시보고서 제출 -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은 2014년 시행	볼커룰은 2017년 7월 21일 부터 대출채권담보부 증권 (CLO) 등 일부 파생상품의 볼커룰 적용을 포함해 완전 시행 예정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주요내용

볼커룰은 은행법인의 자기계정거래 금지와 규제대상펀드를 명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규정이다. 또한 은행법인의 포트폴리오 헤징을 통한 위험관리에 있어서도 볼커룰 도입 이전보다 높은 비용이 수반될 전망이다. 제 2의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 취지와 반대로 시행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효과가 일부 제기되고, 국제적으로도 자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반발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 부보예금취급기관:

일부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

최종 승인안에 포함된 볼커룰의 규제대상은 부보예금 취급기관* 및 종속회사, '국제은행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제8조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다. 볼커룰의 주요내용은 첫째, 규제대상기관의 자기계정거래를 금지하고, 둘째,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취득 및 투자 등의 규제대상펀드 영업 금지, 셋째, 볼커룰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가 가능한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자기계정거래 금지



볼커룰은 차익성 자기계정거래를 차단

* 시장조성업무(Market Making):

트레이딩데스크가 일상적으로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

볼커룰에서 주목할 첫번째 주요규제는 은행법인이 고유계정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상품거래를 하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금지 규제이다. 자기계정거래는 미국 상업은행이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각종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볼커룰이 금지하는 자기계정거래의 금융상품은 증권, 파생, 선물옵션을 포함하며, 현물 외국환 거래 및 현물상품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시장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차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수수료 혹은 고객의 매출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장조성업무 관련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볼커룰의 기본 목적에 따라 시장조성업무*에서 거래직원의 보상 및 인센티브는 자기계정 거래에서 금지된다. 지금 까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고위험 거래나 자기자본 거래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거래에는 회사가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딜러는 증권법(Securities Act)과 상품법(Commodities Act)에서 명시한 법령에 의해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볼커룰은 규제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헤징활동을 내부적으로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나 모든 거래포지션을 취하는 거래주체, 은행법인, 금융지주가 본 조항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여 헤징활동과 관련된 모든 포지션과 거래계약, 주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업무와 마찬가지로 헤징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직원의 보상 및 인센티브는 '자기계정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볼커룰은 은행법인이 헤징으로 가장하여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3가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헤징상품(Hedging Instruments), 포지션(Positions), 제한(Limits), 전략(Strategies), 기술(Techniques)이 서면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된 내용으로 헤징을 할 수 있다. 둘째, 내부 통제와 실시간 모니터링, 헤징의 확대와 제한을 조절할 수 있는 독립적인 테스트(Independent testing) 방법이 서류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은행법인은 이를 반드시 입증하기 위한 분석과 독립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자기계정거래 금지 사항의 예외조항

현재까지 발표된 볼커룰에는 자기계정거래 금지사항에서 (1) 시장조성업무 및 인수업무(Underwriting), (2) 외국은행법인의 미국 외 거래, (3) 위험완화헤징 (Risk-mitigating Hedging)을 위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허용했다.

(1) 시장조성업무 및 인수업무

시장조성업무 및 인수업무의 경우 고객 및 거래상대방(Counterpart)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단기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면제했다.

시장조성업무에 따른 기본적인 규제 면제 조건으로 첫째, 거래가 순수 고객을 위한 고객의 수요에 의한 거래업무여야 하며, 둘째, 고객 및 거래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단기조건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거래관련 금융상품이 일상적으로 매매준비가 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금액(commmercially reasonable amount)'의 금융상품이어야 하고, 금융상품 시장의 깊이(Depth of market)와 성숙도, 유동성을 고려한 거래여야 한다. 아울러 고객 대신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 과거에 유사한 고객의 수요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힘든 거래는 전부 자기계정거래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볼커룰에 면제의 조건으로 서면화된 시장조성업무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볼커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장조성업무 내용>

- 1 금융상품 설명서에 시장조성업무의 의도가 담겨야 함
- 2 거래데스크의 행위는 금융노출 위기를 즉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
- 3 거래 승인 및 확대 절차는 거래데스크의 한계를 초과하면 안 됨
- 4 각 거래데스크는 법규준수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외국은행법인의 미국
소재 외 지역의
자기계정거래는 허용

(2) 외국은행법인 면제

볼커룰은 외국은행법인(Foreign Banking Entity)이 자기계정거래를 하려면 해당 법인은 자기위험(as a principal)으로 미국 소재 외 지역에서 거래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외국은행법인은 자기계정거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거래나 어떠한 헤징거래도 미국 내에서 발생할 경우, 면제조항에 어긋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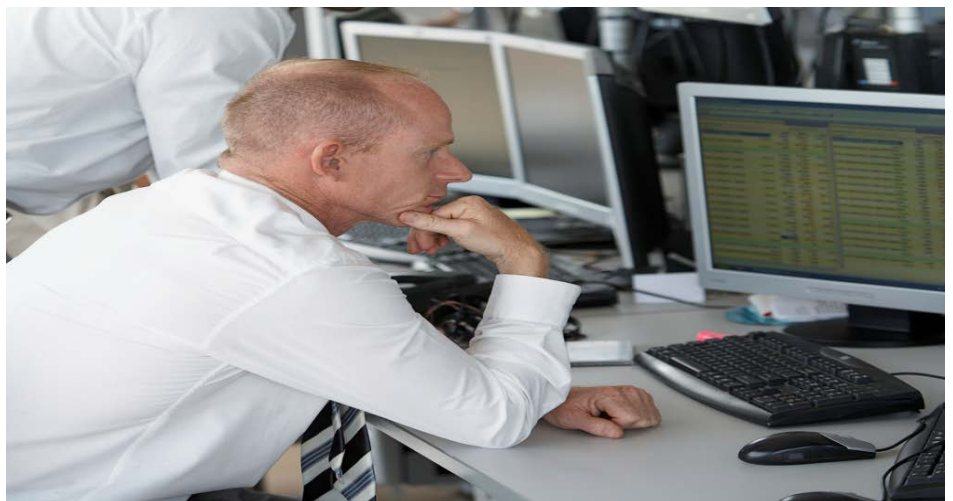
볼커룰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은행법인의 미국지점 또는 계열사가 은행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법인을 통한 거래가 아닐 경우 미국법인의 해외 소재 은행법인과 거래는 허용된다.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되는 거래로 인정 받으려면 외국은행이 미국 밖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자기계정거래 상대방이 미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자기계정거래가 미국 내 시설과 인력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3) 위험완화 헤징(Hedging) 행위 허용

위험완화 헤징업무 및 만기도래로 권리를 행사하는 유동성관리 차원의 거래는 규제 면제를 허용했다. 이는 초기에 의도적으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 헤징활동이거나, 인지가 가능한 정상적인 은행법인의 금융포지션을 통한 헤징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헤징활동 초기에 시장에 새로운 위험이나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시킬 경우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헤징활동으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이나 추가적 위험을 은행법인이 또다시 헤징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규제대상펀드(Covered Fund)* 영업 금지

* 규제대상펀드 (Covered Fund):

볼커룰에서 지칭하는
규제대상펀드 유형은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가 대표적임

볼커룰은 기본적으로 은행법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규제대상펀드의
소유지분을 취득, 보유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볼커룰에서 정의하는 '규제대상펀드'는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Section 3(c)(1) 또는 3(c)(7) 조항에서 제외되지 않고,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발행인을 지칭한다.

규제대상펀드에는 미국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른
선물신탁(Commodity Pool)도 포함되는데, ① 운용자가 상품선물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규정 4.7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였거나, ② 운용자가
상품선물위원회에 선물신탁 운용자 등록을 하고 수익자가 적격투자자만으로
구성되며,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모하지 아니한 펀드를 지칭한다.
또한 ③ 미국법에 따라 미국 내에 설립된 은행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펀드 역시 규제대상펀드에 해당한다. 반면,
볼커룰에서 규제대상펀드로 정하지 않은 펀드는 다음과 같다.

<볼커룰이 규제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펀드 >

- 외국 공모 펀드(Foreign Public Funds)
- 은행소유 생명 보험
- 완전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ies)
- 대출금융증권화(Loan securitizations)
- 투자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인트벤처
- 자산유동화증권
- 인수목적회사(Acquisition vehicles)
- 한정적 커버드 본드
- 외국 연금 및 퇴직연금펀드
- SBICs(Small Business Investment Co.)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의한 거래
- 공공 복지투자펀드, 등록된 투자회사

규제대상펀드 영업 금지 사항의 예외조항

볼커룰 초안에서는 규제대상 펀드의 영업이 전면 금지 되었으나, 현재까지
나온 안에서는 업계의 반발이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규제대상펀드에 대한 투자기준이 새로이 도입·확정되었다. 볼커룰은 외국은행
등에 대해서도 미국외 투자를 전제로 규제대상펀드 투자허용 조항을
마련하였다. 다만, 규제대상펀드 투자가 은행법인의 안정성 및 건전성 또는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허용된
행위라도 제한될 수 있으며, 은행법인은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과 중대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서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1) 예외적 투자 허용

볼커룰에서 은행법인의 위탁, 신탁 혹은 자문서비스 고객을 위한 규제대상펀드는 취득 금지 조항에서 제외되며, 인수 및 시장조성업무와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도 취득을 허용했다. 또한 위험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헤징 행위, 보험사의 일반계정을 통한 거래, 대고객을 위한 거래, 대출금융증권화에 투자 혹은 후원하는 거래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볼커룰 자기계정거래 면제조항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법인의 미국 외 지역에서 운용되는 규제대상펀드도 볼커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규제대상펀드
영업 허용 범위 :**
단일펀드 지분은 3%,
전체투자액은 기본
자본의 3% 수준으로
제한

단 투자 허용 범위에 있어서, 은행법인의 단일펀드의 지분은 3%로 제한되며, 규제대상펀드에 대한 전체 투자액은 해당 규제대상 금융기관 기본자본(Tier1)의 3% 내외로 허용했다. 은행법인이 펀드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신청 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비계열사 투자 유치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법으로 명시한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전성이 유지되면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외국은행의 미국 외 지역 투자허용

볼커룰은 외국은행 등에 대해서도 투자허용 조항을 두었다. 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투자에 관해 하기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내용은 자기자본계정 거래 허용조항의 내용과 유사하다.

<외국은행 등에 대한 규제대상펀드 투자허용 조항 내용>

- 1 은행법인의 투자 의사결정 또는 투자 후원자로서의 활동은 미국 외 지역에서 행해 질 것
- 2 투자 또는 투자 후원 행위, 거래와 관련된 헤징 행위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 3 규제대상펀드의 투자가 미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 4 은행법인의 미국지점 또는 계열사가 은행법인 펀드 투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 준법감시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준법의무를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부감독프로그램

볼커룰은 자기계정거래 또는 규제대상펀드 투자 등에 관련이 있는 외국은행, 은행법인 및 관련계열사가 볼커룰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유지와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준법감시프로그램은 은행법인의 규모 • 사업분야 • 활동의 다양성 • 비즈니스 구조에 맞춰 운용되어야 한다. 준법감시프로그램의 대상은 총자산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은행법인이며 다음 요구 사항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

<준법감시프로그램 요구 사항>

- 1 내부적으로 서면화된 정책과 절차는 합리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자기계정거래와 규제대상펀드의 활동과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함
- 2 내부통제 시스템은 규제대상이 되는 은행법인의 거래행위 및 규제대상펀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역 이외에도 준법감시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까지 찾아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규제에 벗어나는 행위와 투자에 대해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
- 3 준법감시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명시한 관리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함
- 4 효율적인 준법감시프로그램을 위한 독립적 테스트(Independent Testing)은 규제대상 은행법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나 외부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5 준법감시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거래인 및 거래관리자의 트레이닝은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6 문서 및 기록은 준법감시를 입증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은행법인은 최소 5년 이상 문서를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님

또한 자기계정거래나 규제대상펀드에 투자•운용하는 은행법인의 최고경영자(CEO)는 볼커룰 준법감시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
준법감시프로그램은
자기계정거래와
규제대상펀드 거래
모두 포함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볼커룰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 동향

다양한 규제 대응

미국에서 볼커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은 JP모건 (J.P. Morgan),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씨티그룹 (Citi Group) 및 웰스파고(Wells Fargo) 등의 대형 IB이다. 이들은 자기계정 거래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해왔기 때문에 볼커룰의 시행안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매매 등 위험거래의 규제를 강화한 볼커룰의 시행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관련 비즈니스 등의 트레이딩 비중이 큰 금융기관은 펀드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는 볼커룰이 은행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일부 대출행위는 규제에서 제외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골드만삭스는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쇼핑센터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펀드에 최대 20%의 지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및 대출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지분을 3년 전부터 점차 축소해오며 볼커룰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아시아에서 자기계정거래투자(PI) 사업을 하는 자회사 글로벌스페셜오퍼튜니티그룹(GSOG)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씨티그룹의 경우에도 소매증권 중개회사 지분, 유럽 소재 신용카드사 및 소비자 금융회사를 매각하였으며 헤지·사모펀드 자산 60억 달러 이상을 처분했다.



자기자본거래에
수익을 의존해온
대형 IB들의
다양한 볼커룰 반응

<글로벌 금융기관의 대응 현황>

골드만삭스	부동산 및 대출 직접투자 확대, 채권/통화/헤지·사모펀드 투자 일부 철수
JP모건	RBS와 상품트레이딩 합작회사의 유럽 및 아시아 사업부서 매각, 자기자본거래 부문 자회사로 분리 추진
씨티그룹	대체투자 자산운용사 매각, 60억 달러 이상의 헤지·사모펀드 자산 매각
뱅크오브아메리카	노스코브파트너스(50억달러), 리지몬트에쿼티파트너스(14억 달러) 매각, 트레이딩 비즈니스 대폭 축소
도이치뱅크	미국법인 은행 면허 포기, 투자은행 부문만 유지
바클레이즈	미국법인 은행 면허 포기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이 밖에도 볼커룰 시행으로 인해 은행법인들은 내부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커룰 최종안의 승인 이후 미국 법무법인과 컨설팅회사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지향해야 할 사업모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비용절감 및 수익기반 확충, 수요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전문인력 보강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행연합회(ABA)는 최종안 승인 후 볼커룰 시행에 반발하며, 예정대로 볼커룰이 시행될 경우 은행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준은 볼커룰 적용에 대한 일부 방안을 재검토 하였으며 적용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국내 영향 및 시사점

볼커룰 도입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

볼커룰의 대상은 은행법인으로써 한국의 현실로 보면 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증권회사 등의 계열사도 모두 볼커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은행법인의 개념에 속한다. 산업·우리·신한·국민은행 등 미국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우리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 등 은행지주회사의 계열 증권사도 '미국 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볼커룰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등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현지법인과 지점도 볼커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밖에서 수행되는 거래의 면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적용요건이 까다롭고 면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록유지, 준법 등의 의무는 준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의 준법감시프로그램 구축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투자보고서 제출,
기록 유지 및
준법업무 이행을 위한
준비 필요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위험투자와 대형화의 제한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 위축은 국내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및 외은지점의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향후 볼커룰의 세부
감독 규칙 내용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볼커룰의 국내 적용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증권사 및 계열사 등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은 볼커룰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규제기관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볼커룰의 세부 감독 규칙 내용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KPMG는 KPMG US를 중심으로 볼커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KPMG의 리스크관리(Financial Risk Management) 부서는 볼커룰 도입에 따른 잠재적 영향과,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강환우

수석연구원

T: 02-2112-7728

E: hwanwookang@kr.kpmg.com

www.kpmg.com/kr

© 2014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